

표준투자권유준칙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제정 2009.02.04

개정 2009.10.07

개정 2010.12.01

개정 2013.10.22

개정 2015.08.25

개정 2020.04.01

제 1 편 총칙

제 1 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 제 1 항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 (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과생상품 : 장내과생상품 및 장외과생상품
 - 나. 법 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 3 조(투자권유 및 판매의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은행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 투자자 구분 등

제 4 조(방문 목적 확인)

1.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은행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4.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5.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얻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가.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나.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 7 조(과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과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과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 및 제 11 조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1 장 투 자 자 정 보

제 8 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1 호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투자성향 평가결과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5.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 2 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등을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 9 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4. 자금부에서의 일반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는, 투자자정보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다만 제 14 조에 따른 상품설명서 (Indicative Term Sheet) 상에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을 시 투자자가 기 제공하였던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상의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 거래 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 2 장 투 자 권 유

제 10 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등은 은행이 정한 <별표 제 1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등은 은행이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별도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4. 만일, 은행이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 11 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1.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가. 위험회피 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①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②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③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다) 신탁계약

① 법 제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② 법 제 103 조제 1 항제 2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마. 투자자(법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바. 관계법령등 및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3장 설명의무

제 13 조(설명 의무)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 (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음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단, 온라인·전화판매 또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 47 조제 2 항 및 시행령 제 52 조에 명시된 방법에 한함.)

가.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제 2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특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특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등은 제 1 항 및 제 4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가 서명,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전에 교부하는 경우
7.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4 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나.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다.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용
 - 나.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 다.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라.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마.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4 의 2(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제 1 항에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나. 상각 전환의 사유 및 효과
- 다.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라.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마.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 바. 사채의 순위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5 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은행은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제 1 호]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별표 제 3 호>의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다.
 - 가.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나.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2. 은행은 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은행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은행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6 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나.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다.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2. 임직원등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손실보전등의 금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 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8 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 과당 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라.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2.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은행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한 권유 금지

-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은행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은행이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매매권유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은행이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이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은행이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키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차.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1.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은행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 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 5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 1 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 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20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은행이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21 조 (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 은행은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 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은행은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 2 호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별표 제 1 호	적합성 판단 기준
별표 제 2 호	적합성판단 기준(장외파생상품)
별표 제 3 호	장외파생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

<별지 제 1 호>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고객성명 :

고객번호:

직 원 명 :

작성일:

-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고객이 과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위험성향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고객님의 일반적인 성향을 조사합니다. 일반적 투자성향은 고객님의 실제 투자성향과 상이할 수는 있으나 고객님의 적절한 투자위험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여유자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미만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0개월분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초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확인
	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0만원 초과	

	<p>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p> <p>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p>	<p>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p>
	<p>총 자산규모(순자산)</p> <p><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0억 초과</p>	
	<p>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p> <p><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이하 <input type="checkbox"/> 0%초과</p>	<p>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p>
<p>투자경험</p>	<p>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p> <p>(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p>	<p>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의무 간소화 가능</p>

	<p>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p> <p><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p> <p><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p> <p><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p>	
	<p>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회사참고사항 2-1 “파생상품등”의 정의 참조</p>
<p>투자목적</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p>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노후자금, 주택마련, 자녀교육, 사업자금, 여유자금 등 투자자금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p>
	<p>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p><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p>	<p>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손실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p>

	<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초과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파악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손실감내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p>손실 발생시 원금회복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기간</p> <p><input type="checkbox"/> 0~6 개월</p> <p><input type="checkbox"/> 6 개월~1 년</p> <p><input type="checkbox"/> 1 년~3 년</p> <p><input type="checkbox"/> 3 년 이상</p> <p>미수거래 및 신용거래에 대한 태도</p> <p><input type="checkbox"/>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잘 모름</p> <p><input type="checkbox"/> 보유자금 한도 내에서만 투자하여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나,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도 활용할 용의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현재 활용하고 있음</p>	
<p>금융투자 상품 운용계획</p>	<p><input type="checkbox"/> 축소 예정</p> <p><input type="checkbox"/> 현행수준 유지 예정</p> <p><input type="checkbox"/> 확대 예정</p>	
<p>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p>	<p><input type="checkbox"/> 0 개월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 개월 이상 ~ 0 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 년 이상 ~ 0 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 년 이상 ~ 0 년 미만</p> <p><input type="checkbox"/> 0 년 이상</p>	<p>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p>
<p>가족관계</p>	<p><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없음</p>	
<p>과세형태</p>	<p><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p> <p><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p>	
<p>연령</p>	<p><input type="checkbox"/> 0 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세~0 세</p> <p><input type="checkbox"/> 0 세~0 세 <input type="checkbox"/> 0 세~0 세</p> <p><input type="checkbox"/> 0 세 이상</p>	<p>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 할 수도 있음</p>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취약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파악
	<input type="checkbox"/> 고령투자자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input type="checkbox"/> 문맹자 등	

투자자정보 확인

▶ 본인은 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 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귀 은행이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 은행에 통지하여야 귀 은행이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일자 : _____ 고객성명: _____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_____ 서명/인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등 거래희망시에는 체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부적합(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

투자자 성향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

※ 괄호안 부분은 자필기재(하단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명칭 기재)

※ 투자자성향별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성향	공격형		...		안정형
금융투자상품의 위험 등급	초고위험 이하 상품		...		초저위험

※ 명칭 등 분류기준은 회사별 기준으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 투자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으므로 본인 판단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특히, 투자자의 성향에 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투자자가 “부적정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거래가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별지 제2호>_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관련 법률에 따라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이하 ‘은행’) 이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은행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은행이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_____	비상장기업: _____	개인사업자: _____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자산 총계: _____	외화자산 총계: _____
부채 총계: _____	외화부채 총계: _____
연간 수출총액: _____	연간 수입총액: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아니오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_____	_____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2. 위험회피(헤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_____ (전문가 수준):	중: _____	하: _____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 부서: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관련 경력: _____	관련 자격: _____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_____ (전문가 수준):	중: _____	하: _____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 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은행과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_____	_____	조직명: _____ 인원수: _____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_____	_____	규정명: _____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_____	_____	전산시스템명: _____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경험유무	건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 (FX Forward)	_____	_____	_____	_____
FX 스왑 (FX Swap)/ 통화스왑 (Currency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구조화 통화 옵션 (Exotic FX Option): KIKO 등	_____	_____	_____	_____
금리스왑 (Interest Rate Swap)	_____	_____	_____	_____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_____	_____	_____	_____
기타 유형: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은행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 개월 동안에는 은행이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은행에 통지하여야 은행이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위)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법인명) _____

은행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은행이 투자자[_____]과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부서명)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은 투자자로 부터 별지 제1호의 투자자 확인(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자자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은행이 기명 날인을 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가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원본은 은행이 보관합니다.

<별표 제 1 호> 적합성 판단기준

구분		투자위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5등급 (초저위험)	4등급 (저위험)	3등급 (중위험)	2등급 (고위험)	1등급 (초고위험)
투자자 투자성향분류	위험회피형					
	보수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투자권유 불가		
	안정성장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성장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공격형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권유가능

<별표 제2호> 적합성 판단기준(장외파생상품)

1. 만 65 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스왑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 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 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미만이거나, 만 65 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 년 이상 3 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 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가. 금리.통화 스왑

나. 옵션 매수.매도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 인	만 65 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 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p>*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 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별표 제 3 호>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 기준”을 참조할 것</p> <p>* ‘경고’ 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p> <p>* <u>당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계약(경고등급)의 경우, 투자성향이 위험회피형 및 보수형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상기표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과 관계없이 투자권유가 불가함</u></p>			

<별표 제3호>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 분류 기준

주의	경고	위험
원본 초과 손실은 가능하나, 손실범위가 제한적인 상품 →노란색 경고문(상품설명서 상단)	손실범위가 무제한이나 구조가 단순한 상품 →주황색 경고문 (상품설명서 상단)	손실범위가 무제한이고, 구조가 복잡한 상품 →적색 경고문 (상품설명서 상단)
금리스왑, 옵션매수	통화스왑, 옵션매도, 선도거래(선물환)	주의, 경고 상품을 제외한 그 밖의 장외파생상품